

제9조의10(위 · 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)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\[개정 2018. 7. 3., 2019. 6. 25.\]](#)

1. 삭제 [\[2019. 6. 25.\]](#)
 2. 위 · 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 3. 위 · 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
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 · 감독을 위 · 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가.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
 - 나.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 · 감독
-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. [\[신설 2019. 6. 25.\]](#)
-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\[개정 2019. 6. 25.\]](#)
1. 운송사업자가 사고 ·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 · 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
 2. 위 · 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 · 수탁차주에게 위 · 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
- [[\[본조신설 2014. 11. 28.\]](#)
- [[\[제9조의11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9로 이동 <2015. 12. 30.>\]](#)

제9조의11(위 · 수탁계약의 해지) 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 · 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[\[개정 2024. 12. 17.\]](#)

1. 위 · 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 2. 위 · 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 3. 위 · 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
 4. 위 · 수탁차주가 사고 · 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(위 · 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2,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\[신설 2024. 12. 17.\]](#)

[[\[본조신설 2014. 11. 28.\]](#)

[[\[제목개정 2024. 12. 17.\]](#)

[[\[제9조의12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<2015. 12. 30.>\]](#)

제9조의12(위 · 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)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 · 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-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위 · 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
 2.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 · 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
 3. 위 · 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
 4. 위 · 수탁계약의 체결 절차 · 과정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 · 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,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요청하여야 한다.